

# 조세에 대한 법규 각 新문서와 일부 중요정책의 업데이트

2018년 12월 – No.1



# 콘텐츠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최근 일부 새로운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



수출입면세정책의 일부 삭제의 통지서 제95/2018/TT-BTC 호.

2.



과학기술(공예)이전계약서의 등록.

3.



매출액감소의 영수증공급 서비스의 중지.

4.



기계설비보류를 위한 제출구역외에  
창임대절차.

5.



퇴직 보조금을 법규기준보다 더 높게  
받으면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6.



모회사에 기여해준 비용은 합법지출을  
볼수 없다.

7.



개인의 주식을 구입하면 현금 결재로  
가능한지?

# 1. 수출입면세정책의 일부 삭제의 통지서제 95/2018/TT-BTC 호.

2018/10/17일에 재정부는 통지서제95/2018/TT-BTC 호(“통지95”)를 발급해서수출, 입세금분야의 일부 통지를 삭제한다. 본 통지는 2018/12/01일부터 발효한다.

그에 따라, 통지95는 재정부장님의 발표된 다음 법규문서들을 전부 폐지한다:



➤ 통지서 제35/2010/TT-BTC호의 2010/03/12일에 재정부는 수입원료 전부부터 생산된 나무와 해탄에 대한 수출세의 안내;

➤ 통지서 제118/2011/TT-BT호의 2011/06/08일에 재정부는 전기 각 제안의 수입물에 대한 수입세와 VAT의 안내; 그리고

➤ 재정부의 통지 10/2015/TT-BTC호 2015/01/29일에는 연구, 제조의 우대로 필요한 보건기기설비를 조립, 생산을 위한 수입부품들에 대한 면세해준 정부 수상의 2014/09/19일의 결정서 제54/2014/QĐ-TTg호를 구체적 집행하는 안내.

## 2. 공예-기술이전계약서의 등록.

공학기술부는 문서 3457/BKHCN-ĐTГ를 2018/10/30일에 공예이전계약의 등록에 대한 일부조항들을 안내한다.

➤ 공예-기술이전계약의 새로 등록을 해야할 경우:

기업은 기술이전계약을 2017년 공예이전법의 발효시점전에 (2018/07/01일) 계약 하면 그런 계약서들이 2006년 계속기술이전법에 따른 만효시간 까지 진행한다.

계약측들이 2018/07/01일전의 기술이전계약을 실권기관과 등록하려면 2017기술

계약이전법 및 2018/05/15일의 의령규정들에 따라 등록절차, 술서로 한다. 그러나 그런 계약서들을 변경,보충만 하면 각 측들은 국가실권기관과 등록하지 않는 권한이 있다.

➤ 가격 감사에 대한 정의:

의령서 제76/2018/NĐ-CP호의 4조 3항중의 규정에 대한“법규에 따른 가격심사 형식을 통한 가격감사는 조세기관의요구가 있을시 진행한다”, 그런내용을 국가관리의 업무진행 과정중에 조세기관이 가격이전, 탈세문제표현의 발현이 있으면 가격감사 요구 를 하는 권한이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 가격 감사의 순서, 방법을 조세기관의 진행업무 로 한다.

➤ 과학,기술이전법중에 “택크”의 용어:

그런용어의 정의를 따르면 showroom설계도면, 상품생산과정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정보 관리, 보관의 **PC Software**들이 과학기술이전법의 정의로 기술 으로 볼수 없다.

▶ 과학기술이전등록의 신고서 작성 안내:

- 택크-기술이름: 이전측은 인수측에 주는 구체적 공예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이전 기술의 제일 일반화적으로 표현해준다.

- 이전과학기술의 분야: 기업은 이런 부분에 통일성을 보장해준 베트남 경제 분야 씨시스템을 적용해서 기록한다.

- 과학기술 이전: 기술이전의 매 계약은 같이 협상, 계약할때 이전된 내용에 대한 다 구체적 한 비용기준, 결재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다른 정하는 기준이 매 시점에 있는 경우에 기술이전 등록할때 이전의 내용, 대상및 구체 시점에 근거해서 매 이전 대상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공급해준다.

- 기술상품의 품질기준: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되는 아무런 상품에 대한 정하는 기준 이고 그가 기술이전측이 인수측에 대한 책임과 맺어서 등록신고서에 대략적 기록할수 없다.

- 기술상품의 수량: 각 측의 합의된 이전 공예적용으로 생산된 예측의 수량( 생산 년 도 혹 이전계약의 기한에 상응된 수량).



### 3. 매출액감소의 영수증공급서비스의 중지.

Hà Nội세무서는 최근에 문서74022/CT-TTHT를 2018/11/06일에 발표해서 작성된 서비스 송장 처리를 한다 .



본 문서의 안내에 의하면 기업은 고객에게 정기적 기계 보수서비스 공급계약을 위한 VAT송장을 발급했고 양측이 세금계산을 하지만 지금와서 요금이 바뀌어서 고객이 보수를 계속 하고싶지 않으면 기업과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못하는 원인을구체로 반영하는계약 청산 진행 혹은 합의문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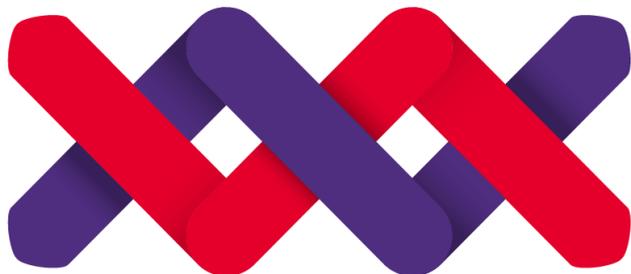
동시에, 그럼 서비스 계약의 작성된 VAT송장에 대한 기업이 규정대로 매출감소의 조정 송장을 작성해야 한다.

## 4. 기계설비보류를 위한 제출구역외에 창고임대절차.

2018/11/08일에 세관총국은 문서 6537/TCHQ-GSQL로 수입기계설비들을 물건저장 창고를 완성대기한 시간에 보류하기위한 제출기업외의 창고임대한 안내를 한다.

그에따라, 이런경우에 제출기업외의 창고는 재정부의 2015/03/25일 통지서 제38/ 2015/TT-BTC호의 8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외부이 기계설비를 보관할때의 각 수속을 다음 처럼 해야한다:



✓ 문서로 통보한다: 제출기업관리 세관기관에게 임대창고장소, 시작-종료시간, 자기 기계설비들을 다시 받는계획을 통보해주고 세관이 양측의 인수인계 과정을 검사할수 있다.

✓ 임대창고에 기계설비들을 가져올때:

기업공장의 기계설비 리스트를 작성 (수입항만부터 임대창고까지 기계설비들을 가져오면 임대창고에 리스트 작성) 하고 물건들을 납봉하나 사진으로 기록한다. 주의: 인수인계 확인서중에 3측의 확인을 필요; 즉, 다음 포함: 제출기업, 창고임대해준 주인, 관리 세관기관들 포함 과 기계설비들의 정보인 상품명,수량, model, Trade mark, 물건 인수인계 날자, 수입신고서 번호,날자, 물건 봉하는 번호나 사진등 포함한다.



✓ 임대창고의 물건을 다시 받아올때:

제출기업의 기계설비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납봉및 사진들과 입,출고상태와 대비를 한다.

주의: 물건의 출고 인수인계에도 3측의 확인이 필요하고 기계설비의 입출고시와 적합 성도 확인한다.

그외에 창고보관시간중에 제출기업은 임대창고중 기계설비의 원상태보관을 책임 지고 세관 통보없는 기계설비들을 국내판매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세관지국은 의문표현이 있을때 돌발적 검사를 보관 물건들에 대한 진행을 책임있다.

## 5. 퇴직 보조금을 법규기준보다 더 높게 받으면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2018/10/19일에, Hà Nội세무서는 법규외에 퇴직 보조금지급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관련 문서 70182/CT-TTHT를 발표한다.

문서의 안내에 의하면 기업이 각 보조금을 추가지급 해준경우(퇴직, 실업 보조금)에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종료시에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규정외의 지급이 있으면:

- 노동계약종료 하기전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준 경우에 기업은 기중 발생된 봉급, 수수료의 각항목들과 종합해서 부분적 누계표에 따른 공제를 한다.
- 노동계약종료한 후의 그런 각 항목들을 지급해준 경우에 200만동 이상의 지급 항목 이면 노동자에게 지급해주기전에 10%기준의 개인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 한다.

## 6. 모회사에 기여해준 비용은 합법지출을 볼수 없다.

Hà Nội세무서는 문서72368/CT-TTHT를 201810/30일에 모회사의 관리비의 수금에 대한 결산을 한다고 발표한다.

본 문서의 안내에 의하면 기업은 총회사(모회사)의 관리비를 형성해준 각 자회사들의 관리비를 수급하는 경우에 기업이 다른소득에 결산하고 규정대로 법인소득세를 신고, 납세한다.

모회사의 관리비를 형성해준 지급비용항목은 통지서 제96/2015/TT-BTC호의 4항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법인소득 과세의 소득계산의 공제를 할수 없다 .

## 7. 개인의 주식을 구입하면 현금 결재로 가능한지?

2018/11/07일, 재저부는 문서 제13666/BTC-TCDN호로 주식구입할때의 결재 방법을 진문하는 의견에 대한 발표를 한다.

그에 따라, 기업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에 주식을 가진 개인들에게 결재금을 하는 경우에 기업이 그 매매 거래관계중에 현금을 사용할수 없다.

# Contact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고객님께서 조세, 외국인의 활동,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과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 **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된다 [Tax Hub](#)

##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mailto:khoi.hoang@vn.gt.com)

###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mailto:du.nguyen@vn.gt.com)

### 大形 薫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mailto:kaoru.okata@vn.gt.com)

### 満重 弘 (Hiroshi Mitsushige)

Manage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9  
E [hiroshi.mitsushige@vn.gt.com](mailto:hiroshi.mitsushige@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mailto:hungdu.nguyen@vn.gt.com)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mailto:valerie.teo@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mailto:mongvan.tran@vn.gt.com)

### 唐牛 理任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mailto:masato.karoji@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mailto:thuphuong.nguyen@vn.gt.com)

